



한국계 Maquiladora를 위한 Executive Summary¹ February 17, 2007

2007년 멕시코 세법개정

2007년 세법 개정은 2006년과 같이 소폭으로 이루어졌으며 멕시코에 직접투자 형식으로 진출한 몇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계 마킬라도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 세법개정의 취지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세수(tax collection)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중 참고가 될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 (1) 2007년 세율: 28%
- (2) New tax incentive: 세무목적감사(Fiscal Dictamante)를 받고 세금예납, 보고기한등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하여 0.5%의 세율을 감면해 준다. (예납액이 실세금에 5%미만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0.25%)
- (3) 세무감사결과 추가세금에 대하여 75%에서 100%의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나 55%에서 75%로 낮추었다. 또한 벌과금은 55%에서 시작하도록 하였고 이미 이전년도에 청구된 벌과금도 2007년에 재조정하도록 하였다.
- (4) 자산세(Asset tax) 율이 1.8%에서 1.25%로 변경되었다. 자산세는 최소세금개념으로 멕시코기업에 상당한 조세부담을 안겨왔는데 대법원의 결정으로 동 자산구입 용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자 세법을 변경하여 용자금여부에 관계없이 1.25%를 납부하도록 하였다².
- (5) 전년도 총수입(Revenue)이 4 백만페소미만인 기업은 자산세가 면제된다.
- (6) 2003년도 10월 30일자 대통령령으로 시작되었던 3% Mark-up감면규정이 2007년에도 적용된다.³
- (7) 식당경비(접대비)의 공제금액을 종전 25%에서 12.5%로 낮추었다
- (8) 출장경비중 항공료, 숙박비를 제외한 경비의 10%까지 15,000 페소 범위내에서 증빙자료가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9) 부가세 환급 option 중 회계사보고서(public accountant report) 규정이 폐지되었다. 환급을 받기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가 강화되었다.

2006년 멕시코 세법개정

- (1) 2006년 세율: 29%

¹ 본 Summary 는 Choi, Kim & Park, LLP (CKP 회계법인)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² 마킬라도라가 직접용자를하여 자산을 구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³ May 29, 2004 자 Executive summary 참조

Choi, Kim & Park, LLP
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

- (2) 멕시코방문자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반출하는 물품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구입금액이 최소 1,200 페소이상이어야 하며 영수증, 여권등을 제출해야한다.
- (3) PITEX 프로그램이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었다.
- (4)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Certified Entity 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내로 처리한다.
- (5) 100,000 페소이상의 현금 또는 금은등 거래가 있었을 때에는 익월 17 일까지 세무당국에 별도 보고한다.

기타 멕시코 Update

- (1) 금년 1 월 1 일부로 멕시코와 중국의 조세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2) 멕시코 경제지표

	2005	2006	2007 (예상)
Gross National Product (GNP) 성장율	3.5	4.7	3.6
Inflation %	3.7	3.9	3.0
Exchange Rate	11.0	10.9	11.2
멕시코석유 (US\$/barrel)	39.8	53.2	42.8
U.S. GNP 성장율	3.6	3.3	2.5
U.S. Inflation %	2.2	3.4	2.3

CKP Opinion

지난해 국민행동당(PAN)의 칼데론 대통령이 당선되고 멕시코는 시장개방과 외국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칼데론은 미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석사출신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 최우선이라고 하여 폭스정부의 친기업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스정부에서 내어 놓은 3% Mark-up 감면안을 2007 년에도 유지함으로써 마킬라도라는 최소 50%의 세금감면효과를 보고 있지만 안정된 inflation 과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성장율에 자신을 얻고 있어서 2008 년에도 동 감면안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조세제도와 정책의 투명성, 비리척결등 긍정적인 정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반면에 금년 상반기중 조세제도와 감시기능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세법및 각종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마킬도라기업들이 잘 모르거나 시행되고 있지않은 멕시코세법중 멕시코근무 외국모기업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원천징수 규정

- (1) 외국에서 출퇴근하는 모기업 근로자가 멕시코에 과거 12 개월동안 183 일이상 멕시코에 있으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Calendar year 기준이 아님을 주의해야하며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멕시코에 나타나면(present) 183 일 계산에 들어간다.

Choi, Kim & Park, LLP
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

- (2) 마킬라도라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멕시코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하며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주소, 고용주, 멕시코에 나타난 날짜등을 기록하고 매 3 개월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야한다.
- (3) 이러한 근로자는 외국모기업에서 급여를 받지만 멕시코내에서 일을하여 받은 소득 (Mexico source income)임으로 멕시코에 소득세를 내야한다.
- (4) 이러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0%, 15%, 30%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으며 익월 17 일까지 멕시코 세무당국에 납부해야한다.
- (5) 멕시코 세무당국과 미국 IRS 와는 1992 년부터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IRS 에도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6) 마킬라도라는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을 외국기업 근로자와 연대해서 지며 미납부한 원천징수액과 55%-75%의 벌과금 뿐만아니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조세범으로 분류하여 3 개월에서 9 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Executive Summary 에 의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Choi, Kim & Park (CKP) 회계법인 (전화 (858)560-5200 이나 Email: hoonkim@ckpcpas.com 으로 알려 주십시오. 끝.